



더 든든해지는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자동지급 기능도 ‘OK’

내년부터 ‘하도급지킴이’가 건설산업 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되고, 발주기관이 지급한 노무비에 대한 자동 대금 지급 기능이 도입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연말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자의 대금 지급정보와 계약정보 등에 대한 이중 입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KISCON과는 양방향으로 입력 가능하고 e-호조는 관련정보를 입력하면 하도급지킴이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가져온다.

조달청은 또 연내 발주기관이 지급한 노무비에 대한 자동 대금지급 기능을 도입해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노무비는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 결정

에 의하지 않고 자동으로 노무자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합의하면 대금 인출 제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할 방침이다.

**조달청, 연내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계 ‘업그레이드’
LH도 다음달부터 도입... 이용기관 총 308곳으로 확대**

아울러 오는 8월에는 이용자 친화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조달교육원에 하도급지킴이 실무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5월 한국환경공단 및 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진흥원 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요청 및 계약체결을 하면 발주기관이 MOU 체결 기관임을 계약담당자에게 표시해 주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건설사업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다음달부터 하도급지킴이를 전국 건설현장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12월 개통한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은 총 308개로 늘어났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199개로 가장 많고, 국가기관은 39곳, 준정부기관

18곳,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 각 12곳, 교육기관 및 공기업 각 10곳, 기타기관 8곳 등이 뒤를 이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스템 개통 초기에는 행정업무 및 공사원가 증가, 영업상 비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편의성을 증진시켜 이용 기관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내년부터 e-호조 및 KISCON과 정보를 연계하고 노무비에 대한 자동 대금지급 기능을 추가하면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따른 편의성과 효율성이 더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추진

건설정책연구원, 제정안 제시... 불공정거래 ‘제동’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이하 연구원)이 조경공사 분야에 처음으로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원은 27일 조경공사의 합리적 도급계약을 지원하고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방안 연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제시한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공사감독원·현장대리인 유지관리 및 감독업무 추가 △조경공사 특성에 부합하는 불가항력 사유 규정 △도급인 유지관리업무 신설 등 시공 과정의 분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공 및 유지관리가 아닌 사유로 수목의 고사위험이 높으면 1년의 범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 결정토록 했다. 또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인용해 공사기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지급 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거절(재검사 포함) 권한을 신설토록 했다.

조경공사 특성에 부합하는 불가항력 사유는 재난(태풍, 홍수, 가뭄, 지진, 화재) 및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

난 사태(혹한·혹서, 염해, 기상이변, 전선·사변, 폭동, 항만 봉쇄, 방역, 병충해, 보안상 출입 제한 등)로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를 변경 또는 중지할 경우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인용해 수급인의 공사 중지 권한을 강화토록 했다. 또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도급인의 부적기 식재요청’으로 구체화하고, 도급인의 유지관리 업무를 신설토록 했다.

더불어 수급인의 지체상금 납부 예외 사유에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하자 등을 추가하고, 수급인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는 도급인의 부적기 식재 요청과 선행공사 지연 등으로 구체화했다.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조경공사는 시장 규모에 비해 계약금액 및 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원도급 비중이 높은 조경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거래 관행과 분쟁이 빈발하는 탓”이라며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을 통해 조경공사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단체 구성원의 분쟁 발생 방지와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